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-2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규정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우리 구 자활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조정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4조의2 신설)

나. 위원의 이해충돌가능성 방지 규정 마련(안 제5조제4항 신설)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규정에 위원의 제척,기피,회피 규정 신설

다. 기금운용관의 직위 하향 조정(안 제12조제2항)

- 「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주민생활국장에서 복지행정과장으로 조정

**라. 자활기금의 용어 정비(안 전반)**

- 보건복지부 「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」에 따른 기금 조성 각 호 용어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(자활공동체->자활기업) 정비

**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전반)**

**3. 참고사항**

**가. 관계법령**

-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3) 「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
- 4) 「2012부패영향평가지침」

**나. 예산조치**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**다. 합 의** : 해당사항 없음

**라. 규제여부** : 해당사항 없음

**4. 기타사항**

**가. 입법예고(2013. 3. 14 ~ 4. 3)결과** : 제출의견 없음

**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** :

관련조문	평가기준	검토 결과	조치 결과
• 제5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	이해충돌 가능성	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(권고)	반영
• 제7조(지원신청 등)	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	재정지원기준의 명확화	반영
• 제9조(이차보전)	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	재정지원기준의 명확화	반영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: 원안동의

관련조문	평가기준	검토 결과	조치 결과
• 제6조(지원대상)	•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-	• 법적 자격요건으로 별도의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원안 동의	해당 없음

라. 2013년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3.4.18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”으로, “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

제2조제4호 중 “기금으로 부터의”를 “기금으로부터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5.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

제2조제6호 중 “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”를 “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용도에 사용한다”를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자활공동체가”를 “자활기업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15조제1항제1호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의2 중 “자활공동

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, “사업 자금”을 “사업자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의3. 법 제18조의2에 따라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을 채용하는 기업에 사업자금 대여

제3조제3호 중 “영 제37조”를 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”로, “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”을 “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

제3조제4호나목 중 “대출받은”을 “대여받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수급자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제3조제6호 중 “밖에”를 “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”로, “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”를 “필요하다고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구금고”를 “구 금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 금고에 예치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

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의 제목“(기금운용심의위원회)”를“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한 다음”을 “관한”으로, “둔다”를 “설치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
4.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
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

제5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제2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제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의 규정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·단체중”을 “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·기관·단체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

2. 법 제18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

제6조제4호 중 “사회복지서비스”를 “사회복지 서비스”로 한다.

제7조 제1항 중 “개인, 기관, 단체”를 “개인·기관·단체”로 하고, 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”을 “구청장에게 신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”을 “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의 제목“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”를“(사업자금 대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활공동체”를 각각 “자활기업”으로, “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”를 “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활공동체는”을 “자활기업은”으로, “10년내”를 “10년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”를 “대여받은 자활기업이”로, “호의 1”을 “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규정에”를 “규정에도”로, “대여 받은”을 각각 “대여받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해체될”을 “해체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”을 “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”로, “6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용도변경의 승인없이”를 “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자활공동체가”를 “자활기업이”로, “이자와”를 “이자율과”로, “이자간에”를 “이자율 간에”로, “5퍼센트의 범위안”을 “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 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활공동체가”를 “자활기업이”로, “취하여야”를 “하여야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비용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7조”를 “비용은 「지역신용보

증재단법」 제27조”로 한다.

제11조 제1항 중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한다.

제12조 제1항 중 “구소속공무원”을 “구 소속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복지행정과장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중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중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”를 “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”로, “출납폐쇄후”를 “출납폐쇄 후”로, “기금의 결산보고서”를 “기금결산보고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매 회계연도마다 각각”을 “회계연도마다”로, “서울특별시구의 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기금의 관리”를 “기금관리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의 관리”를 “기금관리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의3 및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</u>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<u>자활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<u>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<u>기금</u>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국가 및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보조금 및 교부금</li> <li>3. <u>구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</u></li> <li>4. 다른 <u>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</u></li> <li>5. <u>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</u></li> <li>6. <u>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</u></li> </ol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-----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</u>」 ----- ----- <u>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</li> <li>3. <u>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</u></li> <li>4. ----- <u>기금으로부터의</u> -----</li> <li>5. <u>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</u></li> <li>6. ----- <u>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</u> -----</li> </ol>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

1.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
2의2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 용자

2의3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
3.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

4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

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

-----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자활기업이 -----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제1호-----

2의2. -----  
----- 자활기업 ----- 사업자금 -----

2의3. 법 제18조의2에 따라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(이하 “수급자” 라 한다)을 채용하는 기업에 사업자금 대여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37조-----

4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-----

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 
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
가.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 
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

나. 수급자가 대출받은 생업자금  
채무

5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 
증진을 위한 사업(단, 기금의  
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  
하에 한한다.)

6.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  
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  
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 
한다)이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생  
략)

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 
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 
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  
용하여야 한다.

③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 
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1. 구금고에의 예치

2. (생략)

<신설>

----- 신용보증하  
는 경우에 드는-----

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 
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

나.----- 대여받은-----  
-----

5. 수급자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  
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 
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6. -----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 
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  
다)이 -----  
필요하다고 -----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현행  
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구금고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.

1. 구금고에 예치

2.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

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운용계획
2. 기금의 조성, 적립, 운용 및 결산
3.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
4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<신 설>

② 위원회의 구성은 「서울특별시

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) ① ----- 관한 -----  
-----  
----- 설  
치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
4.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

② ----- 「서울특별

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
조례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  
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  
체로 대신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 
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 
등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  
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의 규정  
에 따른다.

<신 설>

제6조(지원대상) 기금을 지원받을  
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  
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·단  
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
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  
상위계층
2. 법 제18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 
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에 따  
른 자활공동체

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 
영 조례」 제2조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  
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--  
-----.

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 
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  
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  
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 
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  
다.

제6조(지원대상) 기금의 지원대상  
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  
는 개인·기관·단체 중 -----  
-----  
-----.

1.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  
위계층
2. 법 제18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 
보장법 시행규칙」 제31조에 따  
른 자활기업

3. (생략)

4.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

5. (생략)

제7조(지원신청 등) ① 제6조에 따른 개인, 기관,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-----  
----- 사회복지 서비스 -----  
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신청 등) ① -----  
- 개인·기관·단체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구청장에게 신청 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-----.

③ (삭제)

제8조(사업자금 대여) ① -----  
----- 자활  
기업 -----  
-----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 -----  
-----  
-----

결정한다.

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.

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정,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때
2.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
3.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

--.

② ----- 자활기업은 -----  
----- 10년 내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보건복지부장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-----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----- 호의 어느 하나-----  
규정에도 ----- 대여 받은-----  
-----.

1. ----- 해체될 --
2. -----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-----  
6개월 -----
3. -----  
-----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-----

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 
때

제9조(이차보전) ① 자활공동체가  
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  
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  
항에 따른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 
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  
를 보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 
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  
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  
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  
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
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 
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신용보증) 제3조제4호에 따  
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 
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7조에  
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 
한다.

제11조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 
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  
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  
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9조(이차보전) ① 자활기업이 ---

-----이자과-----  
-----이자 간에-----  
-----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 안-----

② -----  
- 자활기업-----

③ -----  
----- 자활기업이 -----  
-----  
----- 하여야 -----.

제10조(신용보증) -----  
----- 비용은  
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7조-----

제11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 
자활기업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
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·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
④ 「지방재정법」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

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-----

----- 구 소속공무원 -----

② ----- 복  
지행정과장-----

③ -----  
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  
식----- 별지 제2  
호서식-----

④ 「지방재정법」 중 -----

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

고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 
전에 -----

----- 출  
납폐쇄 후 ----- 기금결산  
보고서-----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

3. (생략)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수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, 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해당연도-----  
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회계연도마다 -----  
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-----  
-----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기금관리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따른다.

② ----- 기금관리-----  
-----  
-----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**  
**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
 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김미자
연락처	02-3153-8806